

연구윤리규칙

기획조정본부 연구관리실(정대홍)

제정 2011. 6.29.

개정 2014.10.17.

개정 2015.12.30.

개정 2017. 2.28.

개정 2017. 8.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의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개발원 내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개발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개발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적용한다.(개정 2014.10.17.)
②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전예방 의무) 원장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자체과제 및 수탁과제의 연구진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

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개발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저자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자기표절” 행위를 포함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경제·사회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기능) 원장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해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 심의 · 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의 차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본조사의 차수, 수행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 위원, 간사 1인을 둔다. 다만, 원장은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 및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 업무는 기획조정본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7.2.28., 2017.8.21)

④본조사의 수행 시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본조사 차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경우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③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 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표절행위 심사대상) ① 표절여부 심사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자체과제 및 수탁과제 보고서 등 1차 생산물로 한다.

② 표절 판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원장은 제보자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기획조정본부에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업무 담당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8.21.)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원장은 피조사자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원칙 및 절차

제16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여부의 입증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원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예비조사) ①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0.)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예비조사는 기획조정본부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8.21.)

④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신설 2015.12.30.)

제18조(예비조사 결과보고) ①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또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개정 2015.12.30.)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등

제19조(본조사) ①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에 착수 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②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권한 및 책임) ①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개발원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원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 등에게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 ①위원회는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

6. 조사결과 및 건의사항
7. 조사위원 명단 등

제22조(판정) ①조사내용 및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23조(이의신청) 제보자 또는 피조사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시하여 기획조정본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17.8.21)

제24조(표절에 대한 조치 및 제재) ①위원회는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저작물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경우 경중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며, 원장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주의 및 경고
2. 해당 발간물에 대한 수정
3. 해당 발간물의 발간 금지
4.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5. 연구원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6. 외부연구자의 경우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 위반 건수 및 고의성 유무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연구참여 배제, 연구과제의 협약 해제, 기 지급 된 연구비 환수, 연구윤리 위반 사실 소속기관 통보 등의 조치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징계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연구윤리 위반의 중대성 및 고의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15.12.30.)

1. 고의·중과실의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주의 또는 경고 등 강·중·약 세 가지 제재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경과실의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주의 또는 경고 및 연구윤리 교육의무 이수와 같은 기타조치 등 강·중·약 세 가지 제재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5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

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부정행위가 발생한 연구과제 또는 논문이 외부기관이 지원한 경우에는 연구지원기관 등에 보고할 수 있다.

제26조(조사의 기록 및 공개) ①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감사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24조 2항의 제재기준은 2016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